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09-11

서 울 고 등 법 원

제 1 -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24누34308 취득세경정거부처분 취소
원고, 피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이○○, 정○○)
피고, 항소인	○○구청장
제 1 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24. 1. 17. 선고 2023구단66187 판결
변 론 종 결	2024. 6. 28.
판 결 선 고	2024. 7. 9.

주 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21. 7. 9. 원고에게 한 취득세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09-11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에 관하여 우리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5면 10행의 "본문에 따른 증여 취득의 추정을 번복할"을 "본문의 적용을 피할"로 고치는 것을 빼면, 같은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구 지방세법 제7조 제11항 본문이 간주 규정임은 원고 주장과 같으나, 위 조문은 일반적 간주 조항과 달리, 같은 항 단서 각 호에서 정한 사실들을 입증하면 그 적용, 즉, 간주 자체를 배제하는 것이며, 이러한 예외 사유, 특히 같은 항 단서 제4호 (라)목에 해당하는지는 결국 여러 간접사실을 모아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이미 사안이 유사한 사건에 대하여 취득세 경정 거부 처분을 취소한 판결(서울행정법원 2023. 5. 3. 선고 2022구단52372 판결)이 항소기각(서울고등법원 2023. 11. 2. 선고 2023누43909 판결) 및 심리불속행의 상고기각(대법원 2024. 2. 8.자 2023두59490 판결)을 통하여 확정되었는바, 이 사건에서도 그와 달리 판단할 이유를 찾을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비록 구 지방세법 제7조 제11항 본문의 법적 성격을 잘못 이해한 점은 있으나, 결과적으로는 우리 법원과 같은 결론에 이르고 있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심○○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09-11

판사 김○○

판사 이○○